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70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군포대야미 A-3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815호(2019.12.24.)로 승인 고시된 군포대야미 A-3BL 공공주택(행복주택 947호) 사업계획에 대하여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군포대야미 A-3BL 공공주택 건설사업(행복주택 947호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경기도 군포시 공공주택지구 내 A-3BL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(사업유형 변경 : 행복주택 → 통합공공임대)